

의안번호	제 254 호
의 결	2000. 12 . 28 .
년 월 일	(제 123 회)

의결사항
철한가결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2000. .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4
------------	-----

제출년월일 : 2000. 12. 21.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소관부서 : 재 무 과)

1. 제안이유

- 보은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 유공자·장애인·교통·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폐지 ⇒ 지방세법제270조4항에 감면 규정이 신설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감면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면적 축소 : 85㎡이하 ⇒ 60㎡이하
- 사권제한토지에 대한감면확대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용지 시설토지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함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확대 ⇒ 2001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연장
-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 종전에 승합차로 분류되어 감면신청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차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차로 전환되어 승용자동차를 승용차의 범위에 규정하여 감면토록 함
- 기타용어정리 ⇒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용어변경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

5.참고자료

- 붙임 1.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 부
2. 현행감면조례와 개정감면조례와의 대비표 1 부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은군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은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 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불가능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

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문화재~~을 위한 감면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 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 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 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 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 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른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
 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
 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
 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
 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보은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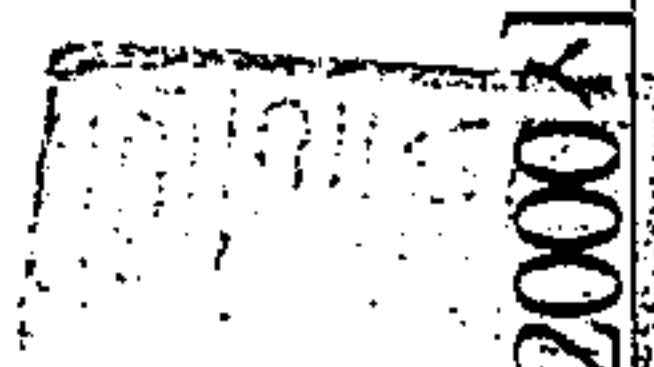
<별지서식>

보은군세감면신청서				처 리 기 간
				7 일
성 명 (법 인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기 번 호)	
주 소				
감 면 내 용	세 목	연 도 / 기 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 면 사 유	보은군세감면조례 ○○조			
보은군세감면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보 은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현행(2000 적용) 감면조례와 개정 (2001 적용) 감면조례와의 대비표

감 면 조 례 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 정 사 유
제1조<안 제1조> 목적	○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좌동	○ 근거법령의 명확화
제2조<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지자 및 그 중상이지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 상이등급 1급 -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본인, 배우자, 국가유공자와의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이외의 경우는 반드시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시에 한함)하여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 면제	○ 좌동	

감 면 조 례 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 정 사 유
	- 베기량 2000시시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베기량 2000시시이하 승용자동차 및 7인승이상 10인이하인 승용자동차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제외) ○ 추정규정 보완 국기유공자를 위한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자동차세 면제하지 아니함	○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개정('99.12.31)으로 7인승이상 10인이하의 승합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름 ○ 단서 조항의 간결, 명료화
제3조 <삭 제> 국기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 추정규정 국기유공자 또는 국기유공자와 공동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 추정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 삭 제	○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반영됨

감면조례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정사유
제4조<안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급 - 3급(시각 :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장애인과의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장애인 이외의 경우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등록시에 한함)하여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추정규정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 추정	○ 좌 동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인승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제외) ○ 추정규정보완 국기유공자를 위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개정('99.12.31)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전환 됨에 따름 ○ 단서 조항의 간결, 명료화

감면조례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정사유
제5조<안 제4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에 한함)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 좌 동	
제6조<안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 업에 대한 감면	○ 제단법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 좌 동	
제7조<안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 좌 동	
제8조<안 제7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도서관 등 사회교육시설용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 평생교육시설	○ 관련법규의 개정 에 따라 용어 정리

감면조례명	헌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정사유
제9조<안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주 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 좌 동	
제10조<안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과 도문화재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 면제	○ 좌 동	
제12조<안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 량지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 하여 지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상시 거주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 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 촌주거환경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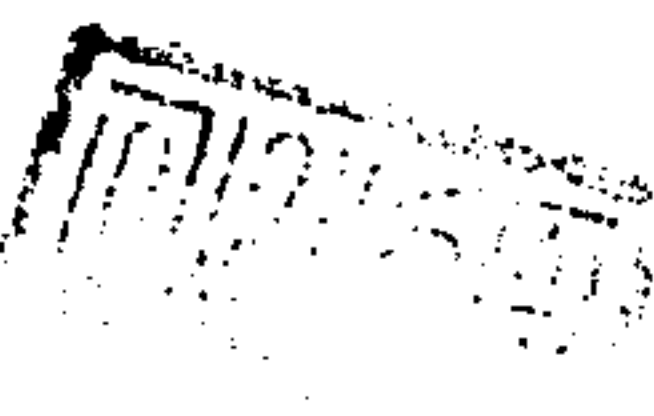
감 면 조 례 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 정 사 유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 재산세 50% 경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 :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로 함 ○추정조항 -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임대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추정	○ 60제곱미터이하 ○ 60제곱미터이하 ○ 좌 동	○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하여 과세의 형평성 도모
제14조<안 제12조>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 받은 자와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

감 면 조 례 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 정 사 유
	○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승인을 얻어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 ○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
제15조<안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 면제,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 제외)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 농업소득세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감면조례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정사유
제24조의4<안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 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 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1,000 분의 3으로 함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	○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
제16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삭 제 ※ '99. 12. 28 폐지안 시군 통보		
제17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 삭 제 ※ '99. 12. 28 폐지안 시군 통보		
제18조<안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 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 하여 종합토지세 50% 경감	○ 좌 동	
제19조<안 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 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 경감	○ 좌 동	

감 면 조 례 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 정 사 유
	<신 설>	○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 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제 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
제20조<안 제17조> 제래시장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군세 경감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50% 경감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제 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50% 경감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	○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
제21조<안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지방공사 등에 대 하여 사업소세 면제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 ○ 좌 동	○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

감면조례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정사유
제22조<안 제19조> 신용보증제단에 대한 감면	○ 충북신용보증제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동 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면제	○ 좌 동	
제23조<안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동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면제	○ 좌 동	
제24조<안 제21조> 유통산업지원 위한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터미널 및 창고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u>최초과세</u> <u>기준일</u> 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50% 경감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
제24조의3 <안 제22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시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중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 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7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	○ 좌 동	

감 면 조 례 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 정 사 유
제24조의5 <안 제23조> 농공단지 대채입 주자에 대한 감면	○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채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50% 경감	○ 2003년 12월 31일	○ 대채입주 감면시점을 2년 연장하여 지방 농공 단지의 활성화 도모
제24조의6 <안 제24조>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 하는 공장 도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 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 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 간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	○ 좌 동 	
<안 제25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신 설>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	○도내 벤처기업촉진 지구내로 유망한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감면조례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정사유
<안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	○ <신설>	○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업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 하여 사업소세 면제	○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제11조 <안 제27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과 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함(다만,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함)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써 연면 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 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함(다만,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함)	○ 좌동 	
제29조<안 제28조> 직접사용의 의미	○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	○ 좌동	

감 면 조 례 명	현행(2000적용) 감면조례	개정(2001적용) 감면조례	개 정 사 유
제30조<안 제29조> 감면신청 등	○ 시(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에게 신청	○ 좌 동	
제31조<안 제30조> 감면자료의 제출	○ 시(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매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 제출	○ 좌 동	
제33조<안 제31조> 중복감면의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 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좌 동	
제34조<안 제32조> 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좌 동	